

비밀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 협약번호 : 경기-C-07
- 과제명 : 자재, 구매조달 선진화를 위한 SCM(공급망관리) 구축
- 협약당사자

- “갑”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 백낙기
- “을” 참여기업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장호승
- “병” IT업체 (주)비즈아이코리아 대표이사 : 최당혁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04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을 (이하 “시스템구축”이라고 한다) 시행하고자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협약 기간)

2004년 08월 02일 (착수일자) ~ 2004년 11월 05일(완료일자)

“을”과 “병”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사업지연(또는 연장) 신청시 “갑”이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의무)

1. “병”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지원내용과 일정에 의거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을”의 확인서류 포함)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병”은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적격 전문가를 투입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등 업종별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 전문가는 타사업에의 중복 참여를 불가한다.
3. “을”은 “병”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을”은 “병”이 “을”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적절한 장소 및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제공한다.

비 밀

5. 업무수행 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6. “병”은 업무수행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력의 추가투입,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을”의 동의를 구하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스템구축” 업무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인 “시스템구축”의 범위와 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와 같다.

제 5 조 (“시스템구축” 비용과 지급조건)

1. 사업비는 일금 일억구십오만원 (₩ 100,950,000) (부가가치세 및 현물 제외)으로 한다.

2. 사업비 가운데 “을”이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정부지원금과 “을”이 부담해야 할 참여기업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참여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50,950,000	50,000,000	100,950,000

* 부가가치세 및 현물 제외

3.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항 목	“을”的 부담금			정부지원금	계
	현금	현물	소계		
S/W개발비	7,300,000		7,300,000	46,700,000	54,000,000
H/W 구입비	10,000,000	-	10,000,000		10,000,000
S/W 구입비	3,650,000	-	3,650,000		3,650,000
N/W 구축비	-		-		-
소 계	20,950,000	-	20,950,000	46,700,000	67,650,000
기타 비용	감리비			3,300,000	3,300,000
	기타	30,000,000	30,000,000		30,000,000
합계	50,950,000	-	50,950,000	50,000,000	100,950,000

* H/W 구입비에 대한 설치장소 및 용도, 기타비용/기타금액의 상세내역 [별첨1] 참조

* 부가가치세 제외

비 밀

4. “을”은 제 3항의 사업비 중 “병”에게 지급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선급금, 중도금, 정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갑”은 정부지원금을 중도금과 정산금으로 분할하여 “병”에게 지급한다.

(단위 : 원)

구 분	선급금	중도금			정산금		
	“을”부담	정부지원	“을”부담	소계	정부지원	“을”부담	소계
지급일	사업착수 10일후	2004-10-15	2004-10-15	-	사업종료 10일후	사업종료 10일후	-
지급액	12,737,500	18,680,000	20,380,000	39,060,000	28,020,000	17,832,500	45,852,500

* 부가가치세 및 현물제외 * 정부지원금 중 감리비는 제외

5. “병”은 지원받은 총 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정부지원금(감리비 포함)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다.

6. “을”과 “병”은 “갑”이 지정한 양식에 사업비 사용내역(현물 포함)을 별도 기록 비치하여 관리하고, 관련 영수증, 증빙자료는 가로 6cm, 세로 1.5cm 크기의 “생산정보화 집행영수증”으로 각인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7. “을”은 사업착수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을”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기청에게 정부지원금 중도금 지급요청을 하고, “갑”은 지방중기청의 중간점검 결과 확인 후 지방중기청의 ~~중도금~~ 지급요청에 의해 “병”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병”은 사업이행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8. “을”은 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후 “을”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기청에게 정부지원금 정산금 지급요청을 하고, “갑”은 지방중기청의 시스템구축 결과 확인 후 지방중기청의 정산금 지급요청에 의해 “병”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병”은 “을”이 부담해야 할 참여기업 부담금 입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9. “갑”은 “지원사업” 수행 도중 “을” 및 “병”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 사유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사유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한다.

11. “병”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한다.

비밀

1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을”에 대해서는 이후 “생산정보화사업 업그레이드 지원”에서 제한 할 수 있다.
13.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병”에 대해서는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5조)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6 조 (사업완료, 검수)

1. “병”은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해 “갑”이 지정한 전문감리기관의 외부감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2. “병”은 감리결과 발생한 보완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조치결과를 “을”에 제출한다.
3. “을”은 외부감리기관의 감리결과보고서(보완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완조치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완료보고서 검토시 “을”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갑”은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보완조치사항에 대하여 “을”的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을”은 완료보고서에 감리결과 및 보완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하고, “을”은 사업완료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5. “갑”과 지방중기청은 “을”的 결과보고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을”的 최종 활용 가능상태 등을 확인한다.
6. “갑”은 사업계획서와 완료보고서의 비교, 감리결과, 현장확인점검결과 등의 검토를 통해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관련자료의 제출 등)

“을”과 “병”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시 가감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 및 “병”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비밀

제 9 조 (협약의 해지, 피해보상)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나. “을”이 사업 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지연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 다. “을”이 “병”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마. 단, “을”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병”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고, 향후 “지원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나. “병”~~에 사업~~ 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지연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 다. “병”이 “을”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라. “병”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병”的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갑”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경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마. 단, “을”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바. “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경우

3. 위 1항과 2항의 경우 발생시 “을”과 “병”에게 7일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다.

비밀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을”은 해지시점까지의 “시스템구축” 비용과 기 지급대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에게 지급한다.

5. “병”的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병”은 “을”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배상한다. 단, “시스템구축” 비용을 초과하는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6. 계약의 해지시 “병”은 그 동안 “을”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며 그 동안 실행한 계약의 모든 결과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하자보수)

1. “하자”라 함은 시스템구축 과정에서 “병”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을”的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이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병”은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한 “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완료보고서 검수 후 “을”에게 설치 또는 개발한 S/W, H/W, N/W, 기타 설비 등에 대하여 1년간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한다.

3. “을”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은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을”的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을”的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장애지원은 하자보수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조 (비밀보장)

“을”과 “병”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을”과 “병”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산의 귀속 및 처분 제한)

1. “지원사업”的 결과 취득한 지적재산권, S/W 등은 “을”과 정부의 공동 소유로 하되, 그 사용권은 “을”에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이를 타인에게 양도 ·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1]

※ 기타비용의 상세내역 (단위: 원)

구 分		특급	초급	계
기준	직접인건비	190,624	92,622	283,246
	제경비	209,686	101,884	311,571
	기술료	80,062	38,901	118,963
	소 계	480,372	233,407	713,780
사용자 교육	업체 수	50	50	
	교육 일수	0.6	0.6	1.2
	시스템 설치	-	-	-
	소 계	14,411,174	7,002,223	21,413,398
개발비	개발 일수	13	13	
	개발 금액	6,244,842	3,034,297	9,279,139
	소 계	6,244,842	3,034,297	9,279,139
합 계				30,692,537
제 안 가				30,000,000

※부가세 제외

※ H/W(PC) 사용처 내역

구 分	PC 사 용 처
협력업체 지원 (3대)	아이엠티(IMT)
	크린트위드코리아(주)
	엠케이에스코리아(주)
(주) 아이피에스 (2대)	구매팀
	Bar-Code gateway용

※ IPS 업체 LIST

No.	거래처명	주소	대표자
1	아이엠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49-7	양승호
2	에스엠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P1동 308호	안병철
3	주식회사 에이텍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갈천리 197	김유돌
4	진성씨아이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7-5	최명식
5	엔티엘테크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360-6	박용운
6	한테크시스템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유통상가 4동 325호	한택규
7	서울실업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6차 903	강병학
8	정보정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55-2	김보성
9	글로벌랩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서봉석
10	그린트위드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3 요진빌딩 603호	이형렬

11	낙트랩	서울시 용산구 한강3 16-9 전자랜드 본관광장층 C-69	강은자
12	(주)노불방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24 대륭테크노타운 308	오경택
13	명신전기상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단지 나-1323	이규은
14	무진금속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오피스텔 13층 1316호	김형출
15	문우엔지니어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2	문철희
16	베리안테크놀로지스(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5	김정현
17	서울플루이드시스템 테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15 중앙빌딩 5층	조문순
18	신우산업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91-11	최윤홍
19	주식회사 씨에스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40(선일테크노피아 304호)	곽병도
20	세화테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76	김표교
21	(주)센테크	경기도 광명시 하안201 광명시범공단 3-333	안영진
22	성도테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량리 323-1	김연수
23	싸이노스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61-40	조상석
24	성준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	박운식
25	에스텍코리아(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SuntechCity 110	미나구치슈
26	엠케이에스코리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75-1 DK프라자 1동 1층	마크무어
27	영창실리테크(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3-16	박현철
28	와이테크(Y. TECH)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시흥유통상가 13동 214호)	차승연
29	인트라코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8-12	고만수
30	유니온메트리얼텍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75-3	이형호
31	인앤텍(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76-233 가	백준승
32	아이엔티(I&T)	충남 천안시 차암동 5-2 천아밸크노타운 404	권만수
33	(주)진주일렉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559-9 안양국제유통 10-129	하재엽
34	제엔텍오토메이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울산 B/D B-2005	이진복
35	코리아테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51 삼성라끄빌오피스텔 1206호	허윤회
36	쿠어스텍코리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085	차은석
37	(주)플로우테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711	성백명
38	(주)한국미스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3804	엔도우요시마사
39	한국와트로(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6 태흥빌딩 3층	김계수
40	햄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226, 227	이진식
41	현대전기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669-11	손순자
42	한국일본전산코팔전자(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1 나주정씨월현회관 7층 705	조의진
43	BROOKS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매리 398-1	에드워드 씨 그레이디
44	한스코프레이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오피스텔 503	한태희
45	VAT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6-2 아거스빌딩 3층	최광오
46	다임테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제리제센터 A동 1303-4	박승룡

[협약서 붙임]

합 의 서

당사는 본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아래의 IT업체로
부터 생산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내에 생산정보
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입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04년 07 월 26일

참여기업 : (주)아이피에스

대 표 자 : 장 호 승 (인)



위 참여기업 성공적인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득한 참
여기업의 정보를 절대 누설치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
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04년 07월 26일

지원기관 : (주)비즈아이코리아

대 표 자 : 최 당 혁 (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귀하

밀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 “을” 및 “병”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 14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업무지침」 및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간에 서명 ·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04 . 07. 26.

(갑)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원장 백낙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 1층

(을) 참여기업명 : (주)아이피에스
대표자 : 장호승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병) IT업체명 : (주)비즈아이코리아
대표자 : 최당혁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대우재단빌딩 9층